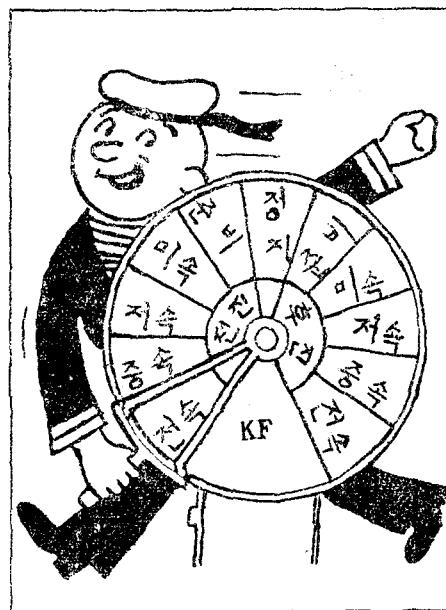


## 어민교실



- ① 어선 세무 행정(1)
- ② 어구 어법에 대하여(1)
- ③ 서해안에서 필요한 해태양식 기술지도(2)
- ④ 알기쉬운 일기도(4)

## 어 선 세 무 행 정

수 산 청 법무담당관  
서기관 임 종 국

◇……이번호부터는 일선 어민들을 위하여 어선에 관한 각종 세무행정을 알아봅니다.……◇  
◇……다음 집필자는 水協 中央會의 高 錫煥 次長입니다(편집자 주)……………◇

어선에 관한 세금은 어선 소유권의 변경, 등록 및 소유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과 어업경영 실적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등으로 대별할 수 있는 데 여기에서는 우선 소유권의 변동, 등록 및 소유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하여만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 1. 취득세

#### 가.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선박”으로 되어 있고 동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이라 하면 기선, 범선, 전마선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과세 대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어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업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배”는 모두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나. 세원(稅源)

취득세의 세원은 재산의 취득행위입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을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출자……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정의하였는 데 그 취득의 형태로서는

① 어선을 새로 건조하여 취득하는 경우(원시취득)

② 어선을 타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승계취득)

③ 어선의 맷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는 경우(유상취득)

④ 어선의 맷가를 지불하지 않고 취득하는 경우(무상취득)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취득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취득세 부과의 세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부과 업무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사실파세의 원칙”과 “현황 부과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실파세의 원칙”이라 함은 어선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이 수산업 법에 의한 등기, 등록, 신고 등 그 취득행위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실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간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현황 부과의 원칙”이라 함은 어선 취득의 경우 공부상 등재 또는 등록된 어선의 선질, 용도, 적량, 기타의 내용이 사실상의 그것과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지방세법상 어선의 취득은 그 범위가 광범위 합니다.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읍니다.

#### 다. 취득의 범위

지방세법상 취득의 범위는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취득에 관계없이 어선의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취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득의 범위로서는

① 승계취득의 일반적인 형태로서의 매매와 교환, 증여, 기부와

② 어선을 건조하여 취득하는 원시취득의 형태

③ 어선의 선질 변경, 용도(종업제한) 변경,

기관의 마련 변경, 적재적량의 변경등에 의한 어선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보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라. 취득세의 납부시기

취득세의 납부시기는 어선을 취득한 때입니다. 지방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선등의 취득의 시기는 사실과세의 원칙에 따라 어선을 사실상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취득 형태별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유상승계취득(有償承繼取得)

어선의 맷가를 지불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후 30일이 경과하면 잔금을 지불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의 지급일 이전에 잔금을 지불한 때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잔금지불이다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 또는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무상승계취득

어선의 맷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일 이전에 등기,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③ 교환

어선을 서로 교환할 목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어선을 실질적으로 상호 인도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연부취득(年賦取得)

어선의 맷가를 수년에 걸쳐 연부로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어선을 취득한 때에는 계약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등기, 등록을 한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어선 건조의 경우

자가건조의 경우에는 어선을 사실상 운항이 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문에 의하여 건조한 때에는 조선소에서 실수요자에게 인도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⑥ 어선 종업제한 변경의 경우등

어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조발주허가를 받아 개조한 경우에는 개조후 검사를 완료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며, 어선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제한 변경에 의거, 시설의 개조를 한 때에는 그 가액이 현저히 증가된 때에 한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⑦ 수입에 의한 취득의 경우

어선의 수입은 어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으로부터 어선을 양수하거나 용선(국적취득 조건부)허가를 받아 어선을 우리나라에 사실상 인취한 날을 취득일로 보며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면장 발급일을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 마. 과세표준(課稅標準)

어선을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어선의 취득가액(取得價額)입니다. 연부취득일 경우에는 그 연부액이 과세표준이 되나, 신고한 연부취득액이 시·도지사가 정한 과세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과세식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식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됩니다.

① 국가·도·시·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어선을 취득한 경우

② 공매에 의하여 어선을 취득한 경우

③ 외국으로부터 어선을 취득한 경우

④ 판결문, 공정증서, 법인의 장부, 계약서 및 기타증서등에 의하여 어선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 바. 세율

어선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分의 20이 됩니다.

#### 사. 면세점(免稅點)

지방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어선의 취득세 면세점은 30萬원 이하입니다.

#### 아. 취득세의 감면

지방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어선의 취득에 따른 비과세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새마을사업을 목적으로 마을공동재산으로

### 취득한 경우

② 수산업 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가 어촌계 규약에 정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③ 위의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④ 수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그 밖에 지방장관이 천재(天災),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취득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수협의 고유업무용으로 어선 또는 선박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게되나 영세한 어민이 취득하는 연근해 어선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 규정이 없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적어도 20톤이하의 비동기대상 어선에 대하여도 취득세의 감면 조치를 취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2. 등록세(登錄稅)

### 가. 등록세의 성격

민법상 재산(무형재산권포함)은 등기함을 원칙으로 하나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법에 의거 20톤이상만 등기하도록 되었고 20톤이하의 어선은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되었습니다.

즉 어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선의 소유자는 그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어선을 등록하여야 하며 선박등기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할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을 등록하도록 하였고, 어느 어선이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동력어선과 총톤수 1톤이상의 무동력어선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선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는

- ① 신규로 어선을 취득하는 경우
- ② 주소지 변경
- ③ 소유자 변경
- ④ 선적항 변경

⑤ 개조발주허가에 의한 선질변경 등이 있읍니다. 따라서 등록세는 위와 같은 사유로 어선등록을 할 경우 그 등록시마다 등록세를 납부하여야하는 이른바 유통세의 일종입니다. 이처럼 어선의 유통거래에 수반하는 담세력을 간접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의 한 형태입니다.

### 나. 등록세의 세원

등록세는 사적거래시 그 거래행위를 공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거능력, 기타 일정한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법률관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행위 또는 그 사실 자체가 과세대상(稅源)이 됩니다.

### 다. 과세표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또는 등록시의 어선가액이 됩니다.

어선가액은 원칙적으로 등기, 등록신청인의 신고어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신고어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어선가액이 등기, 등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선 짓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선짓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됩니다. (지방세법 제130조참조)

### 라. 등록세율

어선의 등록세율은 등기를 요하는 어선의 경우와 등기를 요하지 않는 어선의 경우가 각각 다릅니다.

① 등기를 요하는 어선의 경우(20톤이상어선)

○상속시 : 어선가액의 1,000분의 5

○증여, 무상취득시 : 어선가액의 1,000분의 10

○상속 또는 무상취득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시 : 어선가액의 1,000분의 10

○기타의 취득시 : 매전당 5,000원

② 등기를 요하지 않는 어선의 경우(20톤 미만 어선) : 등기를 요하지 않는 20톤 미만의 어선은 어선가액의 1,000분의 0.2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2,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마. 등록세의 납부절차

① 납세지 : 어선등록세의 납부지는 소유자의 주소지에 불구하고 등록대상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 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선소유자가 충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도 어선등록지(선적항 소재지)가 부산일 경우 등록

세는 부산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처 : 등록세는 납부서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나, 당해 시·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군이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등기용 영수필통지서 1통, 영수필 확인서 1통, 납세자보관용 영수증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영수증의 처리 : 등록세를 납부한 자는 그 어선을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에 그 신청서에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 부족세액의 처리 : 등록세 납부의무자가 등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세를 적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해당 세액 또는 납부부족액에 20%를 가산하여 등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재산세(財產稅)

#### 가. 재산세의 성격

재산세는 수익세적 성격(收益稅的 性格)과 대물세적 성격(對物稅的 性格)을 지닌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순액(財產純額)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총액(財產總額)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세는 소득세의 보완세로서 소득 또는 수익에서 부담되며, 재산 자체를 세원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는 실질적으로는 유형재산을 과세 객체로 하고 그 조세율(粗財產額)을 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물세(物稅)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에 대한 부채를 공제하지 않게 됩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1961년 말 세제개혁 시 국세이었던 대지세, 광구세와 지방세이었던 가옥세 및 선세를 통합하여 시·군 독립세로 신설된 세제입니다.

#### 나. 납세의무자

어선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청에 비치된 선박과세대장에 등재된 어선소유자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선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자라 하더라도 선박과세대장상 소유자와 다를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 다.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납기개시일 현재의 재산가액입니다. 어선의 경우 내무부장관이 고시한 1톤당 과세しが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 과세しが표준액의 결정은 어선의 선질별(목선, 강선등), 용도별, 톤급별, 내용년수별 및 기관의 종류별로 각각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그 기본단위는 어선의 톤수입니다.

#### 라.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어선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과, 재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방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조된 100톤급 안강망어선의 톤당 과세표준액이 150만원일 경우 재산세와 방위세의 납부세액은 36만원이 됩니다.

$$(재산세 150,000원 \times \frac{3}{1,000} = 300,000원, 방$$

$$위세 300,000원 \times \frac{20}{100} = 60,000원)$$

#### 마. 납부기일

재산세의 정기분 납부기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는데, 현재 어선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5월 16일부터 5월 31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바. 비과세 및 면세

어선에 대한 비과세 및 면세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비과세의 경우

○본선에 속하는 전마선

○새마을 사업용 마을공동재산으로 취득한 어선

○어촌계가 그 규약에 정한 사업 달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어선

##### ② 면세의 경우

○천재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

○군수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수협 및 법인어촌계의 고유업무용 어선